

교육활동보호로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

2026. **교육활동보호** 기본 계획

2026. 2.



[교육활동보호담당관]

목차

I. 추진 근거 및 목적	1
II. 추진 배경 및 주요 경과	1
III. 교육활동보호 추진 체계	3
IV. 세부추진 계획	4
1. 교육활동보호 기반 조성	4
·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	4
· 교육활동침해 예방 지원	8
2. 현장 중심 대응 체계 강화	12
· 교육활동 민원대응 체계 강화	12
· 교권보호위원회 운영	18
3. 교육공동체 회복 지원 및 인식 제고	22
· 교[직]원 심리·정서 회복 지원	22
· 교육활동보호 인식 제고	26
4.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지원	29
V. 기대효과	31

2026. 교육활동보호 기본 계획 [요약]

■ 근거

1.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
2. 「2026 경남교육」 5-3-1 안전하고 쉽이 있는 교육공동체 안전망 강화

■ 추진 목적

1.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권리 보장
2.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활동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의 치유·회복 지원
3. 교원 및 교직원 대상 심리지원체제 다양화로 교육 효능감 회복
4. 교육공동체 건전한 소통 체계 구축으로 협력적 관계맺기와 공동체 회복력 강화
5.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 및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

■ 추진 개요

▶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보호로 교육공동체 안전망 강화

- ✓ 교육활동보호 기반 조성
- ✓ 현장 중심 대응 체계 강화
- ✓ 교육공동체 회복 지원 및 인식 제고
- ✓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지원

■ 기관별 주요 역할

학교

- 교육활동보호책임관 운영
- 교육활동침해 예방 계획 수립·운영
- 학교장 중심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구성
- 교육활동침해 대응 역량강화
- 학생·학부모 인식 개선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

교육지원청

- 교육활동보호 계획 수립
-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
-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·운영
- 특이민원 컨설팅 운영
- 담당자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 연수 운영
- 피해교원 치유·회복 연수 운영

교육청

- 교육활동보호 정책 총괄 및 지원
-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및 총괄
- 특이민원 대응 체계 강화
- 교[직]원 심리 치유 지원
- 교육활동보호 교육자료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 확대
- 교육공동체 상호존중문화 확산

■ 2026년 중점 추진 내용

구분	2026년 추진 내용
교육활동보호센터 추가 구축 및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육활동보호센터 3개 지역(창원·김해·진주) 추가 구축 및 운영(3월 초~) - 전문상담사 배치를 통한 교[직]원 상담 지원
교육활동보호 민원대응팀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육활동 민원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,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 • 행정·심리·법률상담 등 교육활동 관련된 전문가 인력풀 구성 현장 지원 • 책임과 회복을 위한 갈등 조정팀 운영

I

추진 근거 및 목적

□ 추진 근거

- 「교육기본법」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7조의3 ('25.1.21.일부개정)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8조의4, 제18조의5, 제18조의6, 제20조, 제20조의2, 제20조의3, 제20조의4, 제20조의5, 제20조의6 ('25.4.1.일부개정)
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0조의3('25.11.25.시행)
- 「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」('25.3.18. 일부개정)
- 「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('25.9.19. 일부개정)
- 「교육활동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」 ('24.8.30.일부개정)
-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('23.10.29.일부개정)
- 「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(' 25.3.6.일부개정)
- 「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」('24.3.28.전부개정)
- 「경상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(' 21.8.26.일부개정)
- 「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」 (경상남도교육청 제2020-1호)

□ 추진 목적

-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
- 교육활동침해 예방 및 침해 신속 대응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
- 교원 및 교직원 대상 심리 치유 지원 체제 다양화를 통한 교육 효능감 회복
- 교육공동체 소통 체계 구축으로 협력적 관계 맺기와 공동체 회복력 강화 지원
- 교육공동체간 신뢰 회복 및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

II

추진 배경 및 주요 업무

□ 추진 배경

- 교육활동침해 및 특이민원 사례 발생의 지속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으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
- 교육활동침해 예방 및 현장 중심 맞춤 지원을 위한 지역별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필요

- 교육활동침해, 특이민원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, 우울감 및 직무 소진 교원을 위한 교직원 대상 심리 치유 지원 체제 다양화 필요
-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 및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통한 교육활동보호 인식 제고 필요

□ 현황

(2023. 9. 25.) 경남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 마련

(2024. 3. 1.) 교육감 직속 「교육활동보호담당관」 신설

- 기존 학교혁신과 교권담당에서 교육활동보호담당 부서 및 업무 신설

□ 2025년 주요 업무 성과

○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

- 도교권보호위원회 및 18개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
- 교원보호공제 확대(심급당 660만원, 분쟁조정, 위협경호서비스)
-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의견서, 교원 복무 지원

○ 교육활동보호센터(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) 운영 현황

- 교육활동보호 상담 지원(행정·심리·법률상담 지원)
- 특이민원 및 위기사안학교 현장 지원

○ 교육활동침해 예방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

- 교(원)감 대상 갈등조정 역량 강화 연수 운영
- 수업방해행동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, 보조 인력(자원봉사자) 운영 지원
- 긍정적행동지원(PBS) 프로그램 운영
- ‘무엇이든 물어보세요’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맞춤형 현장 동행 나눔 지원
- 교육활동보호 예방 청소년 창작뮤지컬팀 ‘꿈틀꿈틀’ 공연 지원

○ 치유 연수 운영 및 치유프로그램 전문화

- 교원정신건강지원팀 운영
- 교직원 맞춤형 심리검사 및 온라인 심리상담(대면, 비대면) 시스템 운영
- 교직원 자율치유연수(자율 치유 프로젝트 운영비 지원)
- 교[직]원 마음챙기기 집합연수 운영

Ⅲ

교육활동보호 추진 체계

비전

교육활동보호로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

목표

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보호로 학생 학습권 보장

추진 과제

교육활동보호 기반 조성

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(4개)

-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운영
- 교원보호공제회 운영(본청)
- 교직원 심리상담(비) 지원
- 교원 법률상담(비) 지원
- 교육활동보호 연수 운영

교육활동침해 예방 지원

- 교육활동침해 예방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
- 교육활동침해 예방 현장 지원
- 교육활동보호교육 운영 및 지원
-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및 현장 안내 자료 제작·배포

현장 중심 대응 체계 강화

교육활동 민원대응 체제 강화

- 교원안전지원시스템 운영
- 3단계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운영
- 교육활동 민원 및 특이민원대응
- 교육활동 민원대응 매뉴얼 제작·배포
- 책임과 회복을 위한 갈등조정팀 운영

교권보호위원회 운영

- 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·운영
-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·운영
-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량 강화
- 침해학생 교육적 조치 내실화

교육공동체 회복 지원 및 인식 제고

교[직]원 심리·정서 회복 지원

- 피해 교원의 치유·복귀 지원
- 위기·소진 교직원 회복 지원
- 쉼과 회복 치유 지원
- 전 교직원 마음건강 지원

교육활동보호 인식 제고

-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확산
-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
- 교육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
- 교육활동보호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

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지원

- 교육감의견서 작성
- 무고성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복무 지원
- 행정·심리·법률상담 지원
- 민·형사 소송비용 지원

IV

세부 추진 계획

1

교육활동보호 기반 조성

▶ 기관별 역할

단위학교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활동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활동보호 연수 운영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 인식 개선
교육지원청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활동 행정·심리·법률 상담 지원 및 연계
도교육청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, 교육활동보호 연수 운영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및 총괄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활동 행정·심리·법률 상담 지원, 교원보호공제운영

1

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

1-1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개요

- (목적)
 - 행정·심리·법률 상담 지원 강화로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
 - 교육활동침해 예방 및 심리상담 기능 강화로 현장 중심 지원체계 수립
- (방향) 교육활동보호센터(본청·창원·김해·진주) 설치운영
- (구성)
 - 교육청: 장학관, 장학사,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사, 전문상담사, 갈등조정전문가, 주무관
 - 교육지원청(창원·김해·진주): 장학사, 교권보호대응전문가, 상담사, 주무관
- (주요 업무)
 - (예방교육) 교육활동침해 예방 자료 개발 및 홍보
 - (행정·심리·법률상담) 교육활동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행정·심리·법률상담
 - (신속 지원) 교육활동보호·아동학대 사안 원스톱 대응

- (갈등조정 지원) 책임과 회복을 위한 **갈등조정팀** 운영
- (행정 지원)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**지역교권보호위원회** 운영
- (회복 지원) 재발 방지 및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
- (기타) 기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**활동 및 센터** 운영
- **(누리집 운영)**
 - 교육활동보호센터 누리집 URL <https://www.gne.go.kr/forteacher/index.do>
 - ※ 콜센터 운영 055-1395, 1811-7679

1-2 교육보호공제 운영

- (근거) 「교원지위법」 제22조
- (대상)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국·공·사립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
- (주요 보장 내용)
 - (배상책임지원) 교원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비용 보상(사고당 **최고 2억**)
 - (소송비용지원) 교육활동침해 관련 민·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제소 시 (1인당 **660만원, 수사단계 330만원**)
 - (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) 교육활동침해 행위로 인해 교원이 재산상(물품) 손해를 입은 경우 보전비용 지원(**피해 물품당 100만원 한도**)
 - (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) 교육활동 중 교원 및 학교가 각종 위협을 받는 사안 발생의 경우 긴급경호지원(**1인당 20일 한도**)
 - (분쟁조정 서비스) 교육활동침해 관련 분쟁발생시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손해사정, 합의(금) 등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

1-3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심리상담(비) 지원

□ 교[직]원 마음건강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개인 심리상담 지원

- (목적) 교육활동 관련 직무스트레스 완화 및 교육활동침해 피해 교원 치유
- (내용) 개인상담, 집단상담 지원
- (이용 방법) 희망 교[직]원 전화 상담 또는 예약 후 대면 및 전화상담
- (이용가능 시간) 평일 09:00 ~ 18:00

□ 외부연계 심리치료(상담)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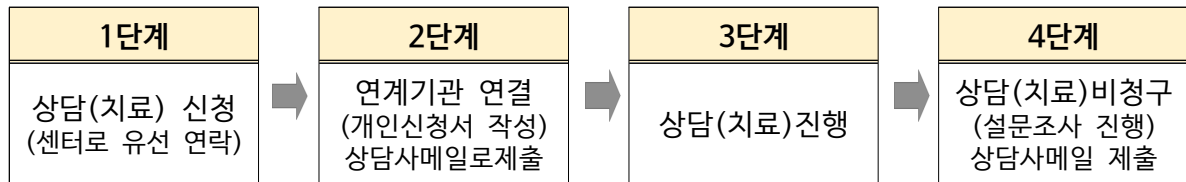
- (대상) 교육활동침해 피해 교원 및 직무 스트레스 호소 교원

※ 직무 스트레스 호소 교원이란: 교육활동침해로 인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지만,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육체적·심리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교원

• (내용)

-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외부 전문기관 연계 체계 구축(전문 심리상담 기관 40기관, 심리 치료 병원)
-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 연계 지원으로 심층서비스 제공
- 상담사 신청 안내 및 외부 전문기관 현황: 붙임 참고

• (진행 절차)



• (외부연계기관 상담 및 상담비 지원 지역별 담당 센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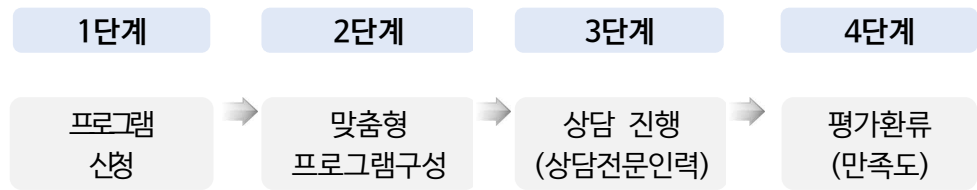
- 교육활동보호센터(본청): 그 외 지역, 경남 도내 전 직원
- 교육활동보호센터(창원): 창원
- 교육활동보호센터(진주): 진주·사천·산청·함양·거창·합천·남해·하동
- 교육활동보호센터(김해): 김해·양산·의령·함안

• (유의사항)

- 진료(상담) 종료 후 청구서, 진료(상담)확인서 및 영수증, 만족도 조사(각각PDF파일) 제출
- 100만원 이내 지원(피해 정도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, 예산 범위 내 변동 가능)
-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연계된 전문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만 상담비 지원
-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대한 비용 지원
- 비용 청구 시기: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가 종료된 시점이나 지원 상환액 100만원 도달 시점(연도별 1회 한정, 당해 연도 12월 초까지 제출하며 기한 경과 시 정산 및 지급 불가)
-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보상, 맞춤형복지비 내 보험료 지급, 경상남도 학예·쟁송에 관한 사무규칙에 의한 보상 등과 중복 지원 불가
- 신청 전 상담(치료) 비용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

□ 위기 사안 발생 학교 교[직]원 상담 지원

- (목적)
 - 학교 위기 사안 발생 후 교[직]원의 상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도움 지원
 - 갑작스런 외상 후 스트레스 발현과 만성화 치료를 위한 회복 지원
- (대상) 위기·중대 사안 발생 학교 교[직]원
- (상담 종류) 학교 희망에 따라 개별상담 또는 집단상담
- (신청 방법) 학교에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공문 신청
- (진행절차)



1-4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(비)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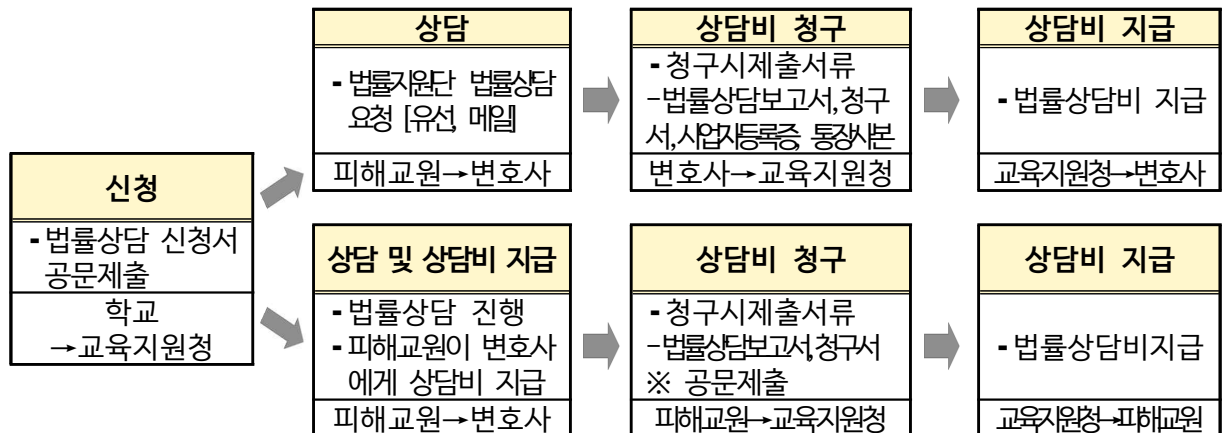
□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지원

- (목적) 법률 상담 지원으로 피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감과 문제해결력 강화
- (내용)
 - 교육활동보호 및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
 -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
- (이용 방법) 희망 교원 전화 상담 또는 예약 후 대면 상담
- (이용가능 시간) 평일 09:00 ~ 18:00
- (상담자)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사 (☎268-1345)

□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

- (대상)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률 상담 희망 학교 및 교원
- (분야)
 -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침해 사안, 특이민원,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한 법률 상담
 - 학교에 대한 특이민원 관련 사안

• (신청 방법 및 절차)



• (인력풀)

-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28명
-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자체 계획에 의한 변호사 인력

• (내용)

- 교원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(※ 단,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)
- 학교에서 지역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 유선 협의 후 지원

2 교육활동침해 예방 지원

2-1 교육활동침해 예방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

□ 교육활동보호 예방 프로그램 운영

- (목적)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학교 차원의 문제 해결을 통해 교원의 교육 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
- (대상)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
- (운영 방법) 학교운영비전입금을 활용하여 학교 상황에 맞게 예산 편성하여 운영
- (운영 내용)
 - 수업방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
 - 지속적인 문제행동학생 상담 및 행동 치료비 지원
 -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

□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(자원봉사자) 운영

- (목적)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(자원봉사자) 운영을 통한 교육 활동보호 및 학습권 보장과 안정적인 교육 여건 조성
- (대상) 선정 학교 335교 (초등학교 296교, 중학교 39교)
- (지원 예산) 교당 7,000,000원 (2026. 통합사업운영비)
- (주요 역할)
 - 수업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(정서행동 위기학생 등) 상시 지원
 -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도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
 - 학교장과 상호 협의로 확정된 교육활동보호 관련 상세 업무 수행

□ 긍정적행동지원(PBS) 프로그램영

- (목적) 심각한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긍정적 행동중재를 통해 수업방해 예방과 교육활동보호
- (대상) 초등학생 대상 30명
- (지원 시기) 2026. 5. ~ 12.
- (지원 방법)
 - 학생당 5회기(회기당 2시간) 집중적인 중재프로그램 지원
 - 행동중재 전문가의 대상학생 학교생활 관찰, 면담 및 분석, 수업설계
 - 개별중재프로그램 계획 수립 후 학생 및 학급단위 컨설팅 실시

| 2-2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

□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[본청]

- (내용) 단위 학교 담당자 교육활동보호 정책 이해 및 업무 절차
- (대상) 교육활동보호 학교 업무 담당자, 관리자, 전교원
- (방법) 온라인 연수(전 교원)

□ 단위학교 관리자, 업무담당자 연수 [교육지원청]

- (대상) 교(원)장, 교(원)감(교육활동보호책임관), 업무담당자 대상 연수
- (내용) 교육활동침해 예방 및 사안 대응 역량 강화

- ① 교육활동보호 관련 제도
- ② 교육활동침해 예방 지침 및 사안 발생 시 대응 매뉴얼
- ③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신속지원단
- ④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운영

□ 교육활동보호 강사단 운영[본청]

- (목적) 교육활동침해 행위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, 학생 상담, 보호자와의 관계 형성 등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교원 강사단 양성
- (운영 시기) 2026. 3. ~ 12. 선발 절차를 거친 강사 30명 내외
- (운영 방법) 양성과정을 통해 선발된 교육활동보호 강사단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급·대상별(학생·보호자) 맞춤형 찾아가는 연수 실시
- (추진 내용) 강사단 양성 과정 연수, 역량 강화 연수, 평가회 각 1회

□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연수(학생, 보호자 대상) [교육지원청]

- (목적) 급별 교육활동침해 행위 예방교육으로 교육활동보호 인식 고양
- (대상) 유·초·중·고·특수 희망 학교 중 학생, 보호자
- (시기) 2026. 5. ~ 10.
- (방법) 교육활동보호 강사단이 신청 학교를 방문하여 연수 실시
- (주요 내용) 교육활동침해 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, 교육활동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, 그 외 기타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내용

□ ‘무엇이든 물어보세요’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맞춤형 현장 동행 나눔[본청]

- (목적) 특이민원·아동학대 등 복합 사안 통합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학교 현장 대응력 강화와 분쟁 사전 예방
- (대상) 희망 초·중학교 (학년별, 모임별로 신청 가능)
- (운영 시기) 2026. 4. ~ 12.
- (운영 방법) 장학사, 갈등조정전문가,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현장 컨설팅단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대화 및 개별 컨설팅 실시
- (추진 내용)
 - 법률·행정·개인정보·아동보호 등 개별 사안 솔루션 제공을 위한 1:1 또는 소그룹 맞춤 상담 진행
 - 현장 해결력 강화를 위한 전문 분야별 핵심 팁 제시 및 사전·현장 질문에 대한 통합 답변 제공

2-3 교육활동보호 교육 운영 및 지원

【교육활동보호책임관】

- 각급 학교 교육활동보호담당업무 총괄 역할 수행자, 교(원)감
-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 업무
- 학교 내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해결, 법적·제도적 보호 지원
- 교육활동보호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

□ 단위 학교 교육활동침해 행위 예방교육 실시 [학교]

- (근거) 「교원지위법」 제24조(교육활동침해 행위 예방교육)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
- (대상) 교직원·학생·보호자
- (운영)

대상	내용	비고
교직원	교육활동보호 및 학생 생활지도 역량강화	대상별 연 1회 이상 필수 학교장이 책임하에 진행
학생	교육활동보호 및 교육활동침해 행위 예방교육	
학생의 보호자	교육활동보호 인식 제고 및 자녀교육	

※ 필수: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학교 누리집에 게시

※ 참고: 교육활동침해 행위 예방교육 자료

【경남교육청 개발 자료】

- 2025년 제작 교육활동보호 예방 교육 자료 PPT(5종) [바로가기](#)
- 2024년 제작 교육활동침해 예방 교육 자료 PPT(10종) [바로가기](#)
- 교육활동보호 홍보 영상: 4종 [바로가기](#)
- 교육활동보호 통화연결음: 2종 [바로가기](#)
- 교육활동보호 관련 카드뉴스: 카드뉴스 5편 [바로가기](#)

□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및 현장 안내 자료

- 2026 ‘경남 교육활동보호 매뉴얼’ 개정 보급
- 교육활동보호센터 리플릿 및 가이드북 제작 보급

2

현장 중심 대응 체계 강화

▶ 기관별 역할

단위학교	<input type="checkbox"/> 학교장 중심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운영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원 안전망 구축을 통한 개인 정보 보호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활동침해 신속 대응(피해교원 보호 등)
교육지원청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·운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관장 중심 교육활동 민원 및 특이민원 대응 <input type="checkbox"/> 거점 교육지원청 「교권보호대응전문가」 배치
도교육청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활동 민원대응 총괄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교육적 조치 내실화 프로그램 보급 <input type="checkbox"/> 책임과 회복을 위한 갈등조정팀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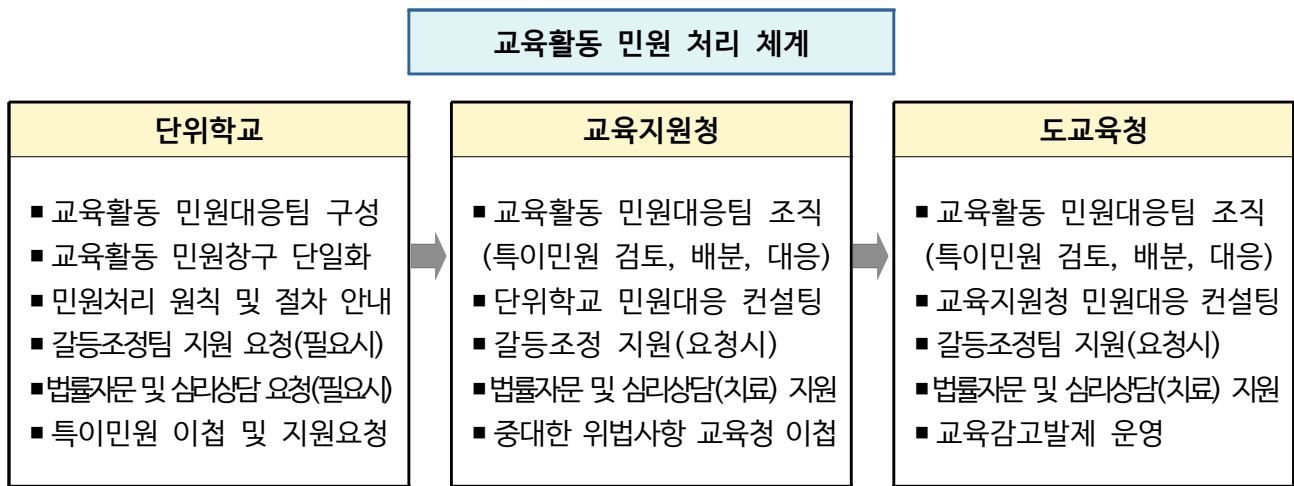
1 교육활동 민원대응 체제 강화

1-1 교원안전지원시스템 운영

교원안전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한 교원 사생활 보호

- (목적) 개인정보보호로 교원의 사생활 보호와 교원 안전망 구축으로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
- (대상) 도내 전 학교 및 교원
- (예산)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 ※학교별 희망에 따라 자율적 편성
- (내용)
 - (통화연결음) 민원 전화 시 법령에 의거 녹취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통화연결음 ARS 서비스 전 학교 제공
 - (안심전화번호) 희망 교원 투넘버 서비스 제공
 - (전화녹음서비스) 통화내용이 녹음되는 전화(유선) 서비스 전 학교 제공
 - (학교공용폰)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한 공용 휴대폰 개통 제공

1-2 3단계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운영



※ 특이민원이란?

- 교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·부당한 사항 요구, 지속적·반복적인 유사민원, 보복성 민원* 등
- * 지속적·반복적 면담 요구 및 전화, 외부인을 통한 국민청원,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등

□ 학교장 중심 교육활동 민원대응팀

● (구성) 학교장 중심의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구성

-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한 4명 이상*의 ‘교육활동 민원대응팀’ 구성

* 협조자로 지정된 교직원 포함

- 개인이 아닌* 기관 단위 대응, 학교장을 중심으로 운영

* 해당 교사 또는 민원대응팀 구성원 중 1인이 대응하는 것도 개인 대응에 해당

● (역할)

- 교육활동 민원은 ‘교육활동 민원대응팀’ 으로 단일화(행정민원은 행정실 담당)

- 민원 접수: 창구 및 방법 등을 교육공동체 협의로 결정

(학교 대표번호, 온라인 시스템 등)

- 접수 창구 안내: 연 1회 이상 모든 학교 구성원에게 안내

- 민원 처리, 갈등조정 지원 요청, 특이민원 처리 및 교육지원청 이첩

□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민원대응팀

- (구성) 교육지원청 ‘교육활동 민원대응팀’ 구성
 - 부서장, 장학사, 갈등조정자(자체),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
 - (권장) 갈등조정자에 대한 교육지원청 자체 인력풀 구성
- (역할)
 - 학교에서 이첩된 특이민원 검토·배분·대응
 - 처리 불가 특이민원은 도교육청 교육활동 민원대응팀으로 이첩
 - 학교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컨설팅 및 지원
 - (갈등조정 지원) 단위학교 갈등조정 지원
 - 교육활동 민원 관련 교직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
 - 교육활동 민원에 대한 단위학교 법률자문비 지원

□ 도교육청 교육활동 민원대응팀

- (구성) 교육활동보호담당관
 - 장학관, 장학사, 변호사, 갈등조정전문가(2명),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
- (역할)
 -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첩된 특이민원 검토·배분·대응
 -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컨설팅 및 지원
 - (변호사) 교육활동 민원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
 - (전문상담사) 교육활동 민원 관련 교직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
 - (갈등조정전문가)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 갈등조정 지원
 - 법적분쟁, 심각한 사안일 경우 교육감고발제 수행

1-3 교육활동 민원 및 특이민원*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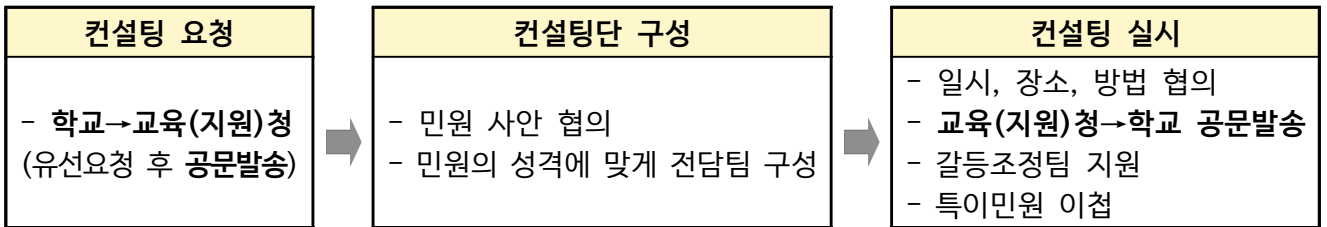
□ 교육활동 민원 처리 및 특이민원대응

- 특이민원 이첩: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

- 교육활동 민원 처리 흐름도

①민원구분	②민원접수·검토	③민원처리	
- 상담요청	- 담당(담임)교사	- 담당(담임)교사	- 민원 종결
- 단순민원	- 민원대응팀	- 민원대응팀 - 담당자 협조	- 민원 종결
- 복합민원	- 민원대응팀	- 민원대응팀 총괄 - 담당자 협조	- 민원 종결, 교육(지원)청 컨설팅 요청 가능
- 관리자 총괄민원	- 민원대응팀	- 학교장 총괄 - 담당자 협조	- 교육(지원)청 갈등조정팀 요청 가능 - 심리상담(치료) 및 법률자문 요청 가능 - 교육(지원)청 컨설팅
- 상급기관 지원민원 (특이민원)	- 민원대응팀	- 교육(지원)청 민원대응팀 - 해당학교 협조	- 민원 이첩 공문접수 - 갈등조정팀 운영, 심리상담(치료)지원 - 법률자문, 교육감고발제 검토

- 교육활동 민원 컨설팅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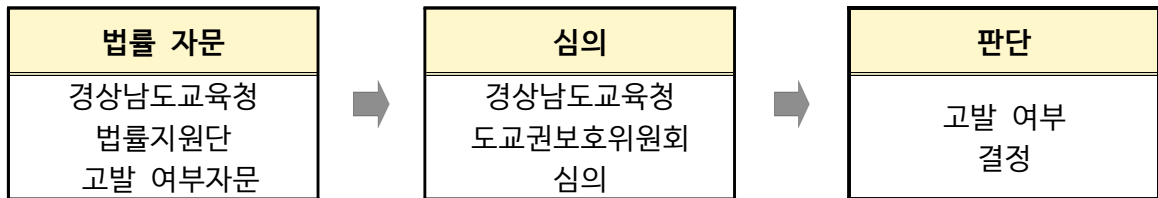


- 특이민원대응 절차

단계	내용	주관
1단계 (현장 대처)	현행법 신고 및 증거·증인 확보 위법행위 관련 사건경위 등 학교장 보고	단위 학교 (학교장, 교직원)
2단계 (특이민원 보고)	“특이민원 발생보고서” 작성·제출 및 지원 요청 * 피해교직원 등 진술 및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	단위 학교 →교육(지원)청
3단계 (법적조치 여부 결정)	사건 발생경위 및 법적조치 계획 보고 법적조치 여부·방안 최종 결정	교육(지원)청
4단계 (법적조치)	법적조치 시 민원내용 관련 해당 업무 부서를 중심으로 고소·고발 등 수사·재판 절차에 체계적으로 대처	교육(지원)청

□ 특이민원에 대한 「교육감고발제」 실시

- (목적) 특이민원에 의한 정상적인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차단
- (고발 대상) 이첩된 특이민원 중 고발 요건이 충족된 사안
- 「교육감고발제」 운영 흐름도



- 경상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고발 여부 자문
 - 기 구성된 경상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
 - (역할) 교육감고발제 요청 사안에 대한 법률적 요건 검토 및 자문
- 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시 고발 요건
 - 교육활동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되는 사안
 - 법률지원단의 자문 과정을 통해 고발 요건 검증된 사안

※ 그 외 사안은 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

▶ 교육감고발제 진행시 피해교원의 역할

- 고발의 주체인 교육감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·제공
-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적극 참여
- 수사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

1-4 교육활동 민원대응 매뉴얼 제작·배포

□ 현장 맞춤형 사안 대응 지원을 위한 대표번호 운영 [도교육청]

-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번호 1811-7679
- 교육활동침해 신고 대표번호 055-1395
-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보호 강화를 위해 교권침해 신고, 심리 상담·법률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

□ 교육활동 민원대응 매뉴얼 및 현장 안내 자료

- 2026 ‘교육활동 민원대응 매뉴얼’ 제작 보급

1-5 책임과 회복을 위한 갈등조정팀 운영

□ 갈등조정팀 운영(학교 · 교육지원청 · 도교육청)

• 갈등조정팀 구성 및 역할

- (구성) 갈등조정전문가, 담당 장학사, 업무 담당자, 상담사
- (역할) 기관별 역할

지원 영역	역 할
학교	갈등조정 안내, 학교장 중심 갈등조정 실시, 갈등조정 참여 의사 확인·갈등조정 요청
교육지원청	갈등 예방 교육, 갈등조정 컨설팅 및 실무 지원
도교육청	회복적 해결 방안 모색 및 컨설팅, 갈등조정 프로그램 진행

• 갈등조정팀 운영

- (기간) 2026. 1월~ 12월(상시)
- (대상) 도내 전 교직원, 학생, 보호자 등
- (지원 영역)

지원 영역	내 용
교육활동보호 갈등조정 지원	▶ 교육활동 중 발생한 갈등에 대한 회복적 해결 방안에 동의한 경우 당사자 간 원활한 대화 및 합의 과정 조성
갈등조정위원회 갈등조정 지원	▶ 교육활동 중 교원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발생한 당사자 간 갈등에 대한 회복적 해결 방안 모색
교육활동 민원 갈등조정 지원	▶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특이민원으로 발생한 당사자 간 갈등에 대한 회복적 해결 방안 모색
직장 내 갈등 갈등조정 지원	▶ 기관(학교) 내 개인·세대 간 갈등에 대한 조정절차 지원 및 회복적 해결 방안 모색

• (운영 절차)

사전 갈등조정	갈등조정 안내	갈등조정 신청	사전 협의	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	후속 관리
학교장 중심 갈등조정,	갈등 조정 필요성 및 프로그램 안내	갈등 조정 프로그램 신청	업무 담당자 협의(대상, 장소, 일시, 방법 등)	지원 영역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(회복적 대화모임 진행)	추가 필요시 재요청 가능, 회복 지원
학교 → 학생, 보호자, 교직원 등	학교, 교육지원청 → 학생, 보호자, 교직원 등	학교 → 교육지원청, 교육활동보호담 당관	갈등조정팀 → 학교, 교육지원청	갈등 당사자, 갈등조정팀	갈등조정팀 → 당사자

※ 전 단계에서 갈등조정 컨설팅 가능

□ 갈등조정 역량강화 연수

- (시기) 년 4회(1회 30명)
- (대상) 도내 전 학(원)교 관리자·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중 희망 교원
- (내용)
 - 갈등조정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기본 연수
 - 갈등조정 진행을 위한 심화 연수

2 교권보호위원회 구성·운영

2-1 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·운영

□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정책 수립 심의

- (구성) 도의원·학교정책국장·교원·학부모·변호사·교수·기타 전문가 등
- 주요 역할
 - (심의) 교육활동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
 - (분쟁 조정)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
 - (교육감고발제) 교육감고발제 요청 건에 대한 심의
 - (장기치유연수, 교원특별연수) 장기치유연수, 교원특별연수에 관한 사항 심의

2-2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

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

- (근거) 「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8조
- (구성)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- (위원)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했
 -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됨

- ①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
- ②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- ③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
- ④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
- ⑤ 해당 교육지원청 지역을 관할하는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
- ⑥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

- (소위원회 구성)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 가능

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

- (회의 소집) 교육장 요청,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요청, 피해교원 요청,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(심의 대상) 유치원, 초·중등학교, 특수학교 등의 교육활동침해 사안
- 주요 심의 사항

- ① 교육활동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
- ② 교육활동침해학생에 대한 조치
- ③ 교육활동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
- ④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
- ⑤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□ 5개 권역 지원을 위한 거점 교육지원청 운영

- 5개 거점 교육지원청에서 권역별 교육지원청 전담 지원

거점 교육지원청	지원 지역(권역)
창원	-
진주	사천·산청·함양·거창·합천
김해	의령·함안
거제	통영·고성·남해·하동
양산	밀양·창녕

- **거점교육지원청 내 ‘교권보호대응전문가’ 역할**
 -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운영 및 권역 지원
 - 교육활동보호 신속 지원팀 및 단위학교 이관 특이민원대응 지원
 -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대응 방안 컨설팅
 - 교육활동보호 관련 행정심판 등 법률 관련 서류 작성

2-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량 강화

□ 교육활동침해 사안 조사 전문성 확보 [교육지원청]

- **교권보호대응전문가의 사안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지원**
 - 교육활동침해 사안 조사 및 법률적 검토 지원
 - 사안발생 보고서 검토 및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
- **학교업무담당자 대응 요령 안내 및 연수 강화**
 - 업무담당 교원의 사전에 지정, 인지 즉시 개입
 - 교육 현장 안정화를 위한 피해 교원 *즉시분리
 - 피해 교원 보호, 사안 발생보고서 작성

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확보

- **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 확보**
 - 법률전문가·청소년전문가·교육활동보호 업무 2년 이상인 교원·경찰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의 전문성 확보
 -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자료 개발
- **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역량강화 연수**
 - (주요 내용)
 - 18개 지역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법·제도 이해
 - 교육활동침해 사례와 대응 방안
 - (시기) 2026년 상반기 및 하반기(2회)

2-4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교육적 조치 내실화

□ 학교내의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- (목적) 학교내의 봉사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위한 실천적 자료 개발 보급
- (내용)
 - 회복 탄력성, 공감 능력 및 상호 존중의 관계성 향상
 - 공동체 의식 강화 등 사회적 정서 인식 함양
- (프로그램 유형) 학생, 담당 교사의 1:1 매칭 프로그램
- (보급 시기) 2026년 3월

□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- (목적) 교육활동침해학생, 보호자 조치에 대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
- (내용)
 - 피해 회복과 학교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 있는 태도
 - 피해와 영향에 대한 직면을 통한 자발적 책임의 의미를 담은 활동
- (대상) 학생, 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
- (보급 시기) 2026년 하반기 예정

3

교육공동체 회복 지원 및 인식 제고

▶ 기관별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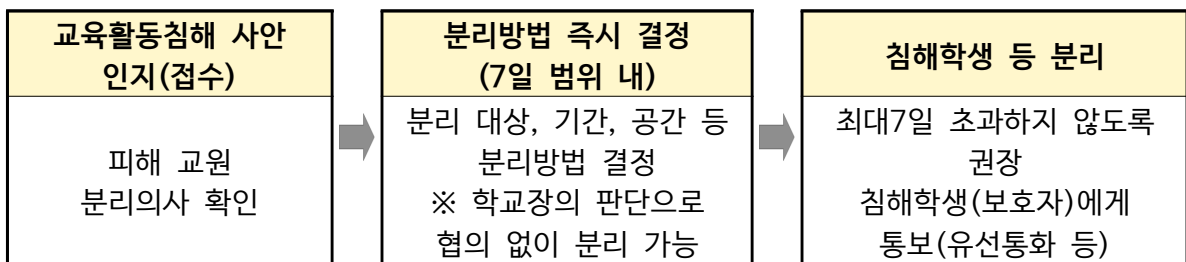
단위학교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조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전 교[직]원의 심리검사 실시 시행
교육지원청	<input type="checkbox"/> 쉼과 회복의 교원 치유 연수 운영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안 발생 시 긴급 지원
도교육청	<input type="checkbox"/> 피해 교원 치유·회복 지원(교원장기치유연수) <input type="checkbox"/> 위기 교원 집중 지원(교원정신건강지원팀) <input type="checkbox"/> 교[직]원 소진 예방 지원(자율치유연수)

1 교[직]원 심리·정서 회복 지원

1-1 피해 교원 복무 지원

교육활동침해 발생시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적극 대응 [학교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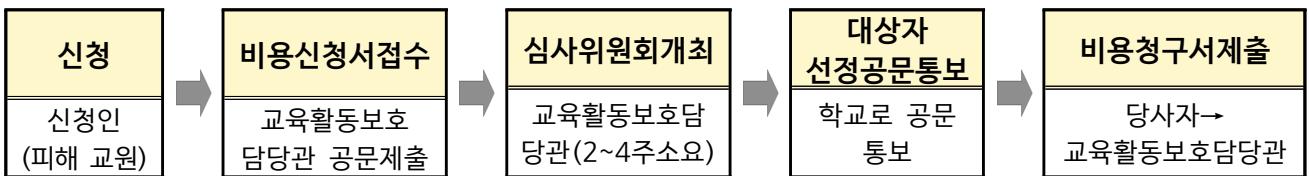
- 학교장 등은 교육활동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
- 분리 절차



- 피해 교원 보호조치
 - 특별휴가, 조퇴, 병가 등 복무지원
 - 응급처치, 병원후송 등 응급조치
 - 교육활동보호센터 행정·법률·심리상담, 공무상 병가 신청 안내 등
 - 5일 이내 특별휴가, 6일 이내 공무상 병가는 학교장(학교장 판단)으로 승인 가능

□ 교육활동침해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비용 지원

- (근거) 「교원지위법」 제20조(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)
- (내용)
 -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지급
 - 1인당 200만원 초과 시도교육청이 우선 지급하고 보호자에게 구상권 청구(보호자의 소송으로 청구 금액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)
- (방법)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이후, 신청서 및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통지서를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공문 제출
- (신청 절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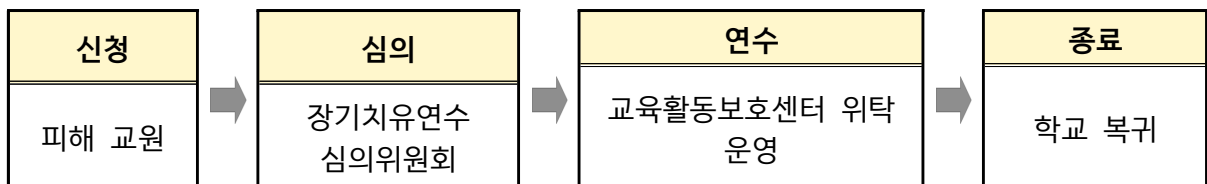


- (유의사항)

-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이 있거나 기타 보험으로 보상 받은 경우 중복 청구 불가
 - 비용지급 대상자 선정 여부 결과 통보(공문)는 접수일로부터 2~4주 정도 소요

□ 교원장기치유연수

- (대상)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침해 피해 교원으로 판단하여 특별휴가, 병가(공무상병가)를 실시하고도 학교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학교장이 추천한 교원(기간제 교원 포함, 유치원은 공립)
- (선정 및 운영 절차)



1-2 위기 교원 회복 지원

□ 위기 교원 집중 지원 교원정신건강지원팀 운영

- (목적)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 및 사안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 및 컨설팅 제공으로 교원의 위기 집중 지원
- (대상)
 - 학교·교육지원청에서 사전 또는 사안 발생으로 인지된 교원
 - 심리·정서적 요인으로 장기·지속적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곤란하다고 종합 검사를 통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
 - ※ 소진 교원이나 희망 교원, 사립 유치원 교원은 제외
- (구성) 교육활동보호담당 담당관, 장학관, 장학사, 전문상담사, 기초·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
- (주요 내용)

초기 지원	치료 진행 이후 지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긴급 심리 상담 관련 지원 방안 설계 -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판단 및 연계 - 각종 위원회 상정 필요성 판단 및 연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신과적 치료 필요 지속성 평가 및 지속적 모니터링 수행 - 교원 치료 종료 후 희망시 지속적 관리

1-3 쉼과 회복의 교[직]원 치유 연수

□ 교[직]원 소진 예방 지원 자율치유연수 운영

※ 자율치유연수란?

- 교육활동침해 피해, 교육활동 또는 지원 업무로 인한 소진으로부터 치유 및 자기 돌봄의 체험을 통해 교직·직무 효능감 고취를 위한 '연수자가 스스로 기획 운영의 주체'가 되는 연수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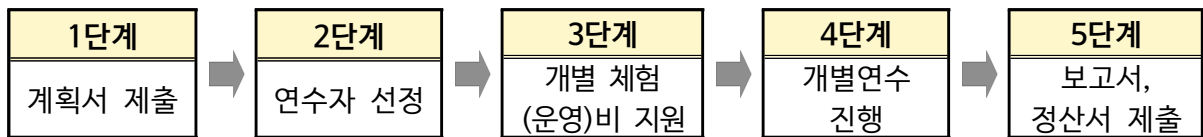
- (목적) 교직원의 심리·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, 교육활동 지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
- (대상) 교육활동침해 피해 교직원 및 희망 교직원
 - 교육활동침해 피해 교직원 및 희망 교직원
 - 경남교육청 온라인 마음건강 프로그램 검사결과 위험군 또는 주의 필요군

• (주요 내용)

- 개별 또는 팀별 자율 기획·운영하는 자율 연수
- 연수자가 본인의 치유 주제와 관련된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운영
- 심리상담, 명상·예술 치유, 회복 워크숍 병행
- 요청시 연수 종료 후 사후관리(멘토링·상담 연계)

• (추진 일정) 2026년 방학 중

• (운영 단계)



□ 교[직]원 마음챙기기 집합연수 운영

- (목적) 교[직]원들을 위한 전문화된 마음챙기기 연수로 회복탄력성 향상
- (대상) 교육활동침해 피해 교직원 및 희망 교직원
- (주요 내용)
 -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관리
 - 심리적 안정과 자기 돌봄 프로그램 운영
 - 맞춤형 치유·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
- (추진 일정) 2026. 5. ~ 11.

□ 쉼과 회복의 교원 치유 연수 [교육지원청]

- (목적) 교원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안정, 교원 직무 효능감 증진
- (주요 내용)
 - 교육활동침해 피해 교원, 사안담당자, 관리자, 대상 치유 연수 운영
 - 연수 시기 및 방법: 교육지원청 개별 계획 진행

1-4 전 교[직]원 마음건강 지원

□ 전 교직원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(치료비) 종합 지원 시스템 운영

- (목적) 전 교직원의 심리적 회복 탄력성 강화 및 건강한 직무 환경 조성으로 교육의 질 제고
- (대상) 경남교육청 소속 모든 직종 종사자(교원교육전문직원일반직공무직 등)
- (내용) 전 교직원 대상 온라인 심리진단, 전문 상담 및 치료 연계
 - (플랫폼 조성) 경상남도교육청 전용 온라인 심리건강 프로그램 운영
 - (진단) 직무 스트레스(개인·조직) 및 심리 상태 정기 온라인 검사 실시
 - (상담) 희망자 대상 1:1 맞춤형 전문가 상담(온·오프라인 병행)
 - (치료) 고위험군 대상 전문 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 지원
 - (보호) 이용자 익명성 철저 보장 및 심리 치유 콘텐츠 제공

□ 심신 회복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

- (대상) 직무 스트레스 고위험군, 교육활동침해 피해 교직원 및 희망 교직원
- (운영 방식)
 - (당일형) 접근성이 용이한 권역별 치유 시설을 활용한 체험 지원
 - (숙박형) 집중적인 심리 회복이 필요한 경우 신청 및 이용 지원
- (운영 시기)
 - 연중 상시 운영(방학·주말·학기 중 평일 포함)으로 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
 - 교직원이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 확대
- (내용)
 - (자연 치유) 숲 치유 센터 등 전문 시설과 연계한 산림 치유 및 명상
 - (관계 회복) 집단 상담·공감 대화법·관계 증진 레크리에이션
 - (자기 돌봄) 탈진 증후군 예방 특강 및 충분한 휴식과 이완 시간 보장

2 교육활동보호 인식 제고

2-1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확산

□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학부모교육 내실화[학교]

- **학부모교육 참여 접근성 강화**

- 영상, 가정통신문 등의 형태로 교육활동보호와 존중에 관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SNS·유튜브 등을 통해 보급
- 교육과정 설명회, 보호자 다모임, 학부모회 개최 시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보호와 상호 존중에 대한 현장 교육 강화
- 보호자와 학교의 새로운 소통 문화 만들기를 위한 지원 강화

□ **교육공동체 상호 존중 문화 조성 [교육지원청, 학교]**

- **존중과 배려의 사제 문화 조성 주요 내용**

- 학생 주도의 교육활동보호 주간 운영
-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의사소통하는 학교문화 형성
- 새로운 세대 교원, 학생, 학부모 이해 교육 강화

【 학생 주도 교육활동보호 주간 운영 사례 】

- 학생자치회 주관 생활 규칙 만들기,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공동체 회의 등
- 학생회 주관 관계 맺기 프로그램 운영_개교기념일, 어린이날, 스승의 날, 공동체의 날 운영
- 학생회 주간 학급 비전, 존중의 약속 정하기, 상호 존중 캠페인 추진 등

- (반영 대상)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 등
- (반영 시기)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

2-2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 교육활동보호 인식 제고

□ **문화예술을 통한 교직원 심리 회복 지원**

- (목적) 문화예술 관람 지원으로 힐링 기회 제공 및 직무 만족도 증진
- (대상) 도내 전 교직원
- (시기) 2026년 상반기 예정
- (주요 내용) 국내 유명 성악가 초빙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노래
- (장소) 경상남도교육청 예술교육원해봄 해봄아트홀(진주)

□ 문화콘텐츠 활용 상호 존중 문화 확산

- (목적) 문화를 통한 존중과 협력의 가치 공감 확산으로 교육활동보호 인식 제고
- (대상) 도내 전 교직원·보호자·학생 등
- (주요 내용)
 - 통영청소년뮤지컬단 ‘꿈틀꿈틀’ 에서 ‘교육활동보호’ 를 주제로 공연
 - 공연을 통한 학생 중심 문화예술치유 및 공감 확산
 - 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 기반 문화 행사로 추진
- (공연 시기) 2026년 11월(예정)

■ 2-3 교육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

- (대상) 위기 사안, 특이민원, 무고성 아동학대 피신고 피해 발생교(학교단위)
- (주요 내용)
 - 교육활동침해 등으로 인한 학교 단위 심리 공동체 회복 지원
 - 학교별 침해 사안에 맞는 상담프로그램 구성 운영(심리 전문가 지원, 트라우마 전문가 지원, 공동체 재건프로그램, 문제해결력 향상 등)

■ 2-4 교육활동보호 홍보 자료 제작 및 보급

□ 교육활동보호 홍보를 통한 공감대 확산[도교육청]

- (목적) 교육활동보호 인식 개선을 통한 공감대 확산
- (방법) 홍보 자료 제작 보급
- (내용)
 - 교육활동침해에 대한 법률적 이해 및 피해 교원 지원 안내
 - 교육활동침해 예방자료 등

□ 교육활동보호 상호 존중 문화 홍보 [도교육청]

- “교육활동보호로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만들기” 홍보 영상 제작 보급
- 교육활동보호 학교 구성원 역량 강화용 홍보 자료 제작·보급
 - 교육활동침해에 대한 법률적 이해 및 피해 교원 지원제도
 - 교육활동침해 예방자료 등

4

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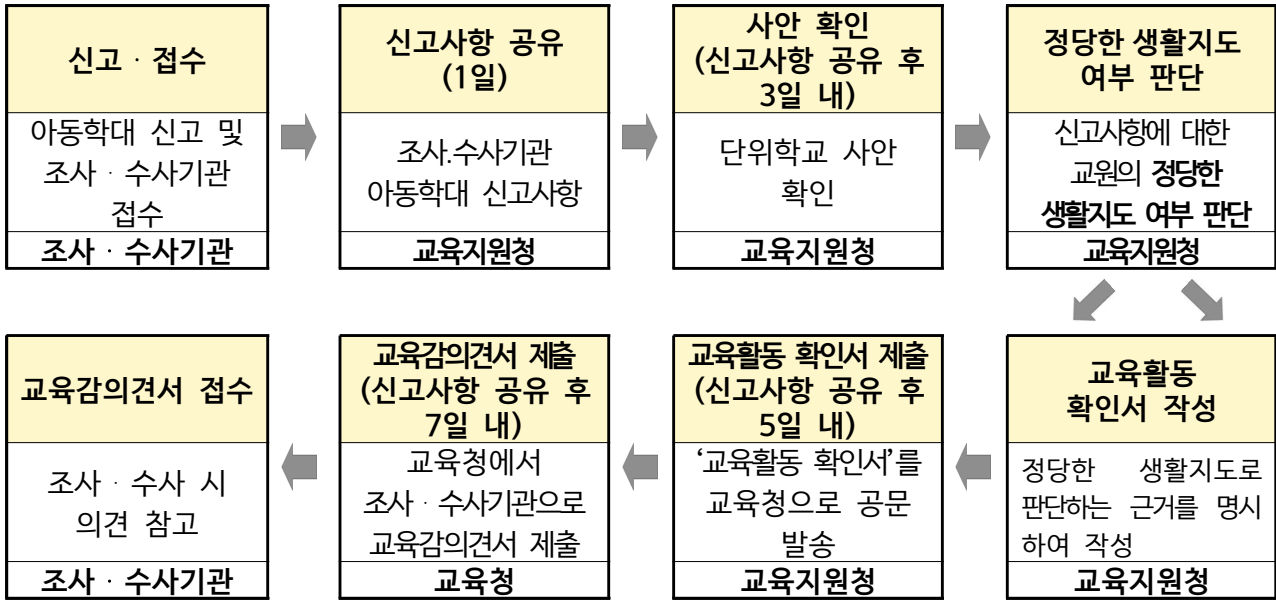
▶ 기관별 역할

단위학교	<input type="checkbox"/>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 인식 개선
교육지원청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활동확인서 작성 <input type="checkbox"/>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원 행정·법률·심리 상담 지원
도교육청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사 및 조사 기관에 ‘교육감의견서’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무고성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복무 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무고성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행정·법률·심리상담 지원

4-1 교육감의견서 제출

- (근거) 「교원지위법」 제17조(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)
- (목적)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학교 현장의 특수성 고려를 바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조사 기관 제출
- (주요 내용)
 - (학교) 피신고 교원에 대한 지원 방안 안내(법률 상담 및 자문, 심리 상담)
 - ※ 교육활동보호센터(1811-7679, 055-1395)
 - (교육지원청)
 - 교육활동 전담 인력·지원 인력(권역 교권보호전문가)로 구성
 - 교육활동 확인서 작성: 교원의 ‘정당한 생활지도’ 여부 판단
 - (교육청)
 - 교육감의견서 작성: 교육지원청에서 상신한 ‘교육활동 확인서’ 를 바탕으로 ‘정당한 생활지도’ 여부 판단
 - ※ 7일(공휴일 제외) 이내(교육지원청에서 최초로 신고 사항을 공유받은 후) 관할 조사·수사기관(지자체, 경찰 등)으로 공문 통보

〈교육감의견서 제출 절차〉



4-2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교원 복무 지원

- (목적) 실효적 분리 조치 마련으로 교원의 복무 보장
- (대상)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
- (기간) 3개월 이내 탄력적 운영(1회 연장 가능)
- (내용) 교육활동보호 관련 연수, 심리상담 및 치료(요양), 치유
- (기관) 교육활동보호센터(본청)
- (복무) 교원연수 파견 처리 : 연수 파견 형태로 급여, 호봉, 교육경력 100% 인정
 ※ 최종 아동학대 유죄 판결 시 인사규정 대로 처리
- (방법) 해당 교원 소속 학교장이 요청하면 **교원특별연수** 운영

단위 학교 신청	교육청 심의	도교육청 연수운영
▪ 소속 학교장이 특별연수 신청	▪ 심의 후 연수대상자 선정	▪ 교육활동보호센터 위탁

□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소속교 컨설팅

- (목적)
 - 회복 탄력 지원으로 교육공동체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
 -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 인식 개선

- (대상)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소속교
- (운영 방법)
 -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소속교의 컨설팅 희망을 받아 실시
 - 장학사,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대화 및 컨설팅 실시

V

기대효과

- 교육활동보호를 통한 교원의 지휘 향상과 교육 발전 도모
- 교육활동보호 지원 체제 구축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
- 교직원의 치유·회복 지원 강화로 교직원의 교육 효능감 회복
- 상호 존중 문화 조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및 강화